

<8.6(금) 석간 (인터넷 8.6(목) 06:00 이후)>



보도자료

▶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 김경선
서기관 박일훈

T E L : 02-2110-7334

E-MAIL : castilect@naver.com

F A X : 02-503-9731

▶ 2010. 8. 5. 배포, ▶ 총 2 쪽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노사분쟁 해결서비스를 위해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입법 예고

- 2010.8.5,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조직·기능 개편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했다.
- 이는 복수노조 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를 뒷받침하고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신속·공정한 노사분쟁해결 서비스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계의 의견, 언론·국회의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참고 1】 노동위원회법 개정 추진경과 참고

- 우선 노조법 개정으로 2011.7.1부터 복수노조 제도 도입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과정에서의 각종 분쟁해결을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 이로 인해 제기되는 각종 이의신청 및 구제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였다.

- 또한 국민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간의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절차·체계를 개선하였다.
- 먼저, 국민의 분쟁해결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중노위 재심 이후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했던 것을
 - 지노위 판정 후 중노위 재심신청 기간(10일)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15일 이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판·조정·차별시정으로 나누어져 있던 공익위원 담당분야를 심판과 차별시정을 통합, 심판과 조정담당으로 간소화하고
 - 공익위원이 소속된 지노위 사건만 담당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던 것을, 상황에 따라 다른 지노위 사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위원 활용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였다.
 - * 공익위원 : 노동위원회 사건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법·노사관계 전문가들을 상임·비상임으로 위촉하여 운영
- 또한 노사 당사자 모두의 사건처리 만족도를 높이고 처리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화해와 단독심판의 요건을 확대하였다.
- 특히, 공익위원 위촉과정에서의 노사 교차배제 방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촉방식을 개선토록 하였다.

【참고 2】 노동위원회법 입법 예고문

【참고 1】

노동위원회법 개정 추진 경과

- '09.3~6월, 노동위원회제도 개편 및 발전방향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연구용역* 실시
 - * 「노동위원회제도 발전방안 세부연구」(국제노동법연구원)

- '09.11.12, 「노사협력정책 선진화 포럼」 개최
 - * 주제 : 노동위원회 심판·조정기능 전문화와 근본적인 혁신방안

- '10.5월, 「노사분쟁해결 서비스 개선 TF」를 구성, 제1차 회의 개최(5.4)
 - ▲ TF 외부위원 : 김태기(단국대), 박영범(한성대), 이승욱(이대), 박지순(고려대), 김종각(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동응(경총 전무)

- '10.6.1, 제2차 「노사분쟁해결 서비스 개선 TF」 회의를 개최

- '10.7.28, 「노사협력정책 선진화 포럼」 개최
 - * 주제 :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

- '10.5~7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참고 2】

노동위원회법 입법 예고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10-28호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으로 함) 개정으로 복수노조 설립 규제가 폐지(2011년 7월)되고 사업장 단위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창구 단일화가 의무화되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해결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였음

이에 노조법 개정에 따라 제기되는 각종 이의신청 및 구제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기능을 보강하고자 함

아울러, 고용노동부 출범에 맞추어 의무적 재심제로 인한 권리분쟁 해결 지연 등 노동위원회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신속·공정한 노사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이와 함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모든 조문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기간 도과 후 당사자 선택에 의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에 대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중노위 업무범위에 둘 이상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치는 다수인 관련 심판·차별시정사건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 제26조, 제27조)

나. 노동위원회 위원장·노사단체의 추천과 노사단체의 교차배제에 의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함(안 제6조제4항)

다. 위원장·상임위원의 업무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사건 등을 포함하며 부문별위원회로 교섭대표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운영방

식을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 담당분야를 심판담당과 조정담당 2개 분야로 통합하고 조정담당 공익위원 업무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사건 등을 포함함(안 제6조제5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6항)

라. 노동위원회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해 전원회의 외에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를 두어, 위원회 운영의 일상적인 사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에 대해서는 공익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마. 공익위원의 전문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위원회가 일정 권역별로 위원들을 공유하며 부문별 위원회 구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바. 당사자간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와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확대하고, 화해의 활성화를 위해 차별시정 사건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결정사건에 대해서도 화해제도를 적용하며 사건 심문 전에도 화해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제16조의3)

사. 노동위원회의 보고,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부과한 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함(안 제33조)

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醇化)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구성함